

江原地域 特化產業의 發展方向

A Study on the Developing Direction of Specialized Industry in Kangwon Area
- 地方財政의 機能을 中心으로 -

申 仁 淳*
(Shin, In Soo)

논문접수일 : 1997. 10

게재확정일 : 1997. 12

목 차	
I. 序 論	IV. 地方財政의 擴充方案
II. 地域의 産業構造	V. 結論
III. 地域特化와 生物産業	<參考文獻>

I. 서 론

강원도는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이며, 농경지는 타도시에 비해 협소하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강원도는 철, 석탄, 중석, 석회석 등 지하자원의 생산지이며, 매년 제주도 다음으로 내외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1996-1997년 중에는 제조업생산의 둔화와 지역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었으나 관광부문에서는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았다.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통신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산업이며, 해당업체간의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의 산업은 광업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산업합리화의 대상산업으로 지정된 후 쇠퇴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발달 또한 그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어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시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도내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낙후되어 왔다. 그러나 WTO체제의 출범이후 무한경쟁시대와 지방화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을 향상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尚志大學校 國際通商學科 副教授

강원도는 천혜의 관광지가 많아서 주민 소득중에서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1995년도의 도 전체의 관광수입은 4,320억에 이르고 있어서 제주도 다음으로 관광의존도가 높고 또한 극동지역의 관광승수도 높지만 지역 제조업의 발전은 결코 도외시 할 수 없다.

한편 중소기업의 역할은 지역의 여건상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며, 고부가가치의 미래 산업의 육성은 기존의 첨단산업 육성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중소기업위주의 강원도 산업구조와 교통부문의 현황, 지역특화가 요청되는 생물산업 및 이를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관하여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역의 산업구조

1. 산업구조의 특성

(1) 중소기업형 산업구조

강원도의 기업규모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단히 영세하다. 1996년도 말 현재 총 4227개 제조업체 중 99.7%가 종업인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인데 반해 5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이 69.1%에 달하고 있다. 물론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도 2.9%에 불과해 실제로 97%의 도내 기업체가 50인 미만의 소기업내지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기업체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표 1> 강원도내 제조업체 현황(1996)

계	영세기업 1~4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301인 이상
		소계	5-10인	11-20인	21-50인	소계	51-100인	101-200인	201-300인	
업체수	4,772	3,297 (69.1)	1,329 (27.8)	656	368	305	131 (2.7)	86	39	6 (0.3)
종업원수	49,533	6,309 (12.7)	19,746 (39.9)	4,420	5,563	9,781	13,137 (26.5)	5,981	5,678	1,478 (20.8)

그리고 도내 기업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청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기업의 비율이 74.2%로서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아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 관계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금력과 기술력 등이 강한 대규모 모기업의 역할을 할 만한 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며 특히 강원지역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료 품과 비금속광물제조업종은 생산구조의 특성상 계열화를 이루기 어렵게 되어 있다.¹⁾

업체들의 영세성수준은 업체당 부가가치생산액 수준의 비교를 통해서도 가름할 수 있는데 <표 2>에서와 같이 도내 중소업체들의 1개업체당 부가가치 생산액 수준은 전남을 제외한 최하위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표 2> 중소기업의 1개업체당 부가가치생산액

(단위: 백만원)

지역별	전국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 가 가치액	619.9	590.6	692.2	1,222.5	874.9	675.2	484.1	739.1	960.3

자료: 강원도, 강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 1996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구조상 강원도는 전국에 비해 제1차산업인 농림어업의 비중이 크고 제2차산업인 광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광공업중에서도 제조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이 30.1%인 반면 강원도는 16.5%에 불과하여 심한 불균형상태를 보이고 있다. 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 농림어업과 광업은 강원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으로써의 그 명맥을 유지했으나 광업의 경우 80년대 후반 국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이후 급격한 쇠퇴현상을 보이게 되었고 농림어업도 우루파이라운드 등을 통한 수입자유화조치로 인해 성장의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표 3>전국 및 강원도의 생산구조(경상)

(단위: %)

구 분	1985		1990		1994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강원도	전국
농 림 어 업	20.6	12.6	13.8	8.5	12.4	6.9
광 공 업	28.8	31.6	23.6	31.6	19.8	30.5
(광업)	(15.2)	(1.2)	(7.9)	(0.6)	(3.3)	(0.5)
(제조업)	(13.6)	(30.4)	(15.7)	(31.0)	(16.5)	(30.1)
건설및전기,가스,수도업	13.0	10.7	18.8	13.7	19.8	14.6
서비스업 및 기타	37.6	45.1	43.9	46.2	48.0	48.0

자료: 통계청, 1994년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1996)

도내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빈약한 제조업 하나만을 놓고 볼 때에도 업종별 생산액을 보면 시멘트중심의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식음료품제조업의 두 업종

1) 국토개발연구원·강원개발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1997, p. 68.

이 제조업 전체 생산액의 59.4%를 차지하는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제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이 6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서비스업이 강원도내에서 크게 발달해서라기 보다 제2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업체들도 영세한 소규모의 상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4>와 <표 5>는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과 산업별 생산증가율을 전국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을 통해 본 도내 경제 성장률은 전국수준에 비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며 15개 시도중에서도 최하위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산업별로 나누어 그 성장치를 보았을 때에도 강원도는 전국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저성장지역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강원도의 산업구조가 지금까지 외부여건에 매우 경직적이었고 성장이 거의 없는 취약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전국 및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불변가격) 증가율

	1986	1988	1990	1992	1994
전 국	14.5	11.9	7.3	5.8	8.6
강 원 도	6.5	4.6	5.9	3.3	6.0

자료: 통계청, 「1994년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1996)

<표 5> 전국 및 강원도의 산업별 불변가격생산액 증가율(%)

	1991/92			1992/93			1993/94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산업
전 국	6.8	4.1	6.6	-1.7	5.0	8.2	1.8	11.5	8.1
강원도	3.0	-0.4	4.6	-2.6	-1.6	7.2	8.2	1.2	7.2

자료: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주: 1990년 불변가격 기준

(2) 강원도의 특화산업 현황

지역의 산업구성 분석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입지계수²⁾(Locational Quotient: LQ)지수를 이용해 강원도 산업의 상대적 특화의 정도를 살펴보면, 제2차산업인 광공업 부문 중 산업중분류에 따른 모든 업종별 개별 LQ지수를 생산액기준, 종업원수기준, 부가

- 2) 입지계수란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그 산업의 특화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입지계수에 의하면 한지역(i)의 특정산업(j)의 평균산출액이나 고용인구가 전국평균보다 높아 전문성을 보일 경우 그 산업(j)은 그 지역(i)의 기반산업이라고 불리며 지역 i는 j산업이 전문화되었다고 한다.(홍기용, 1996) 입지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입지계수}(LQ_{ij}) = (\text{i지역의 } j\text{산업 구성비}) \div (\text{전국의 } j\text{산업 구성비})$$

가치생산액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승업(1997)은 <표 6>에서 LQ지수가 1보다 크게 나타난 모든 광공업부문의 업종을 제시하였다.

<표 6> LQ지수에 의한 강원도 광공업의 업종별 특화현황

생산액기준 우위업종	종업원수기준 우위업종	부가가치생산액기준 우위업종
①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8.45)	①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4.51)	①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7.62)
②음식료품제조업(3.31)	②음식료품제조업(4.30)	②음식료품제조업(2.88)
③석탄광업(2.27)	③석탄광업(1.87)	③석탄광업(2.65)
④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1.11)	④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1.54)	④의료, 정밀, 광학기기(1.15)
	⑤고무및플라스틱제조업(1.07)	

타지역에 비해 강원도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제2차산업 업종은 유리, 위생도기, 벽돌, 시멘트, 암면제품 등을 생산하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음식료품제조업, 그리고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과 석탄광업을 꼽을 수 있다. 메디슨전자를 비롯해 몇몇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홍천지역 등에 입지하고 있는 데 부가가치생산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러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종도 어느 정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업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화업종의 시대별 추이를 보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몇몇 업종 이외의 여타 업종들은 상대적 부진을 면치 못하여 강원지역의 광공업구조는 이들 특화업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특성을 띄게 되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도내 종업원수 15인이상의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제조업체들은 강원지역에 입지하여 특화된 생산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업종으로 음식료품 제조업을 가장 압도적(44.4%)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3.7%가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종을 꼽았는데 이는 춘천, 홍천,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정보통신산업 및 영상멀티미디어산업의 유치, 육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듯하다. 그 외에는 응답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제조업종(6.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종(5.1%), 섬유제품제조업종(5.1%) 등이 적합한 업종으로 꼽혔다.³⁾

<표 7>에서와 같이 강원도의 전체 산업측면에서 볼 때 고용수준기준으로는 제조업 부문과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부문을 제외한 전반적인 부문의 LQ지수가 1보다 큼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부문,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부문, 광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매우 특화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강원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는 점과 수자원 및 각종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 작용되었다. 그리고 지역 경제 및 제조업의 중요기반이 되는 운수, 창고 및 통신업부문과 금융서비스부문의 LQ지수가 모두 1보다 크기 때문에 강원도의 제조업기반이 비관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3) 국토개발연구원, 강원개발연구원, 전계서, p. 73.

<표 7> 도내 지역별, 산업별 고용기준 LQ지수

	도내전체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태백권	영월권
농업·수렵업 및 임업	2.00	5.00	0.67	0.67	0.33	5.67
어 업	1.22	0.07	2.67	-	-	1.00
광 업	20.0	1.60	3.80	1.40	97.2	52.4
제조업	0.57	0.52	0.48	0.85	0.31	0.4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00	1.57	5.00	0.86	2.29	6.71
건설업	1.08	1.54	0.96	1.114	0.70	0.80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2	1.06	1.18	1.34	0.46	0.31
숙박 및 음식점업	2.06	0.53	4.29	0.82	0.23	4.64
운수·창고 및 통신업	1.42	1.60	1.88	1.18	0.87	1.10
금융 및 보험업	1.54	2.41	1.62	1.13	0.84	1.46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0.57	0.71	0.66	0.51	0.54	0.14
교육서비스업	1.21	1.65	1.24	1.48	0.31	0.5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7	1.61	1.71	2.26	1.35	1.48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09	1.73	1.09	0.86	0.73	0.91

자료: 이종민, “강원도 지역경제의 특성과 성장요인”, 강원포럼, 1997.

도내 지역권별 전문화정도는 춘천권의 경우 1차산업과 금융·보험업부문에서, 강릉권의 경우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부문이, 원주권은 도내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다.

II. 교통시설 현황

강원도 교통의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관광수요로 인한 관광 및 휴가기간동안의 유발교통량이 강원도 전체의 교통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특정 기간 뿐만이 아닌 관광비수기에도 나타나는 일상적인 교통흐름이 되었다. 이는 강원도의 순수 내부통행량 년간 132,286천대의 통행과 관광수요로 인한 5,574천대의 통행이 성수기에 집중되어서 발생되는 것으로 도시교통보다는 지역간 간선교통의 문제이다. 따라서 강원도의 교통문제 해결은 도민 뿐

만이 아니라 관광수요를 포함한 유동인구의 포괄적인 대안을 찾아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 도로교통 현황

강원도내 도로망 골격은 동서방향으로 영동고속국도, 국도 44호선 및 46호선과 국도 38호선 그리고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춘국도 46호선이, 남북방향으로는 국도 7

호선과 국도 31호선, 국도 5호선이 주간선기능으로 지역간 연계를 하고 있다.

도로시설의 경우 94년 현재 7,245km로 90년에 비해 연평균 8.48%의 증가를 보였으나, 수요에 해당하는 자동차보유대수는 21.8%나 상승하여 공급시설의 부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표 8> 강원도의 교통여건

구 분	단 위	전 국	강 원 도	대 비(%)	비 고
인 구	천인	44,453	1,580	3.5	
도로연장	km	73,833	7,245	9.8	
고속도로	km	1,650.1	187.9	11.4	
일반국도	km	12,045.7	1,827.8	15.2	
지 방 도	km	10,655.4	1,006.5	9.4	
시 군 도	km	35,780.8	4,223.3	11.8	
철도 연장	km	6,558.8	337	5.1	
공항 개소	개	14	2	14.3	
항만 개소	대	27	5	18.5	
자동차보유대수	천대	7,404.3	201.3	2.7	
자동차 보급율	%	16.6	12.7	-	대/천명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1995

<표 9> 강원도 주요 교통실태 추이

구 분	1988년	1990년	1992년	1994년	연평균증가율(%)
인구	1,730,905	1,580,430	1,555,082	1,580,430	0.81('92-'94')
도로 시설(km)	5,346	5,230	5,433	7,245	8.48('90-'94')
자동차보유대수	53,957	91,400	161,419	201,350	21.83('90-'94')
관광객수요	19,742,375	21,846,165	22,651,404	22,698,755 ¹⁾	1.27('90-'93)

주: 1)은 1993년 자료임.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1995

강원도, 강원통계연보, 각년도

도별 도로연장을 비교하여 보면 경기도가 9,259km로 가장 높으며, 강원도의 경우 도로연장 만으로는 5순위에 해당하나, 도별 면적대비 도로연장 비교표를 보면 가장 하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로연장으로 비교하는 각 자치단체들간의 비교는 의미가 없고 면적대비 도로연장으로 보아도 강원도의 SOC시설 부족현상은 심각함을 볼 수 있다.⁴⁾

또한 강원도내 일반국도 교통량의 경우는 연평균 19.5%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

며, 고속국도의 경우 평균 6%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국도가 포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표 10> 고속국도 교통량 추이

(단위: 대/일, %)

고속도로명	구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증가율(%)
영동고속도로	새말-강릉	11,549	11,725	12,769	15,667	7.9
동해고속도로	강릉-동해	14,104	12,544	14,330	17,835	6.0
중앙고속도로	춘천-홍천	-	-	-	6,084	-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년도

2. 철도시설 현황

1995년 현재 강원도내 철도시설 현황은 10개 노선 337.3km로서 전국 철도망 연장 6,516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철도가 담당하고 있는 여객과 화물수송의 절대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공로 해운 항공의 수송실적 증가율보다 낮아 수송 분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 주요 철도시설 현황

(단위: 천명, 천톤)

선별	기종점	길이 (km)	역수	강원도		여객수송		화물수송	
				구간	역수	승차	하차	발송	도착
중앙선	청량리-경주	387.2	73	판대 - 신림	7	1,142	1,148	132	598
영동선	영주 - 강릉	193.6	35	동절 - 강릉	21	1,574	1,755	6,059	1,330
경춘선	성북 - 춘천	87.3	17	경강 - 춘천	6	1,868	1,975	32	204
태백선	제천 - 백산	103.8	19	쌍용 - 문곡	14	1,221	1,242	7,050	1,615
정선선	증산-구절리	45.9	6	증산-구절리	6	327	295	148	233
삼척선	동해 - 삼척	12.9	1	동해 - 삼척	1	1	1	1,970	292
북평선	동해 - 삼화	6.4	1	동해 - 삼화	1	-	-	3,619	2,388

자료: 교통통계연보, 1994.

강원도 교통행정과 내부자료, 1995.

III. 地域特化와 生物産業

1. 생물산업의 수급전망

4) 강원개발연구원, 강원도 교통부문 SOC 확충방안, 1996, p. 27.

생물산업은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산업군이며, 생물의약·생물화학·생물환경·바이오식품·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생물산업은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산업이며, 자본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인 기존의 산업과는 달리 무형의 가치가 투입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첨단산업이다.(산업연구원, 1994)

또한 첨단기술산업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으로 2000년대 첨단기술산업의 전세계 수급구조를 예측한 미국의 DRI 보고에 의하면 반도체·생물산업등 8개 첨단산업중 생물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22.1%로 가장 성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2> 2000년대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미국 DRI사의 성장전망

(단위: %)

구 分	생물산업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자동차	항공기
1992~2005 종 합	22.1	9.4	9.1	6.9	5.6	3.5	1.4
1994~2000	24.7	10.6	8.6	7.4	5.7	4.3	1.8
2001~2005	18.6	7.7	10.0	6.3	5.4	2.3	1.2

자료: 통상산업부, 생물산업 육성방안, (1994. 11)

국내 생물산업은 아직은 산업 형성기인 관계로 극히 소규모이며 1993년의 경우 시장규모는 1,683억이고, 생산규모는 1,521억원이다. 또한, 수출규모는 569억원이고, 수입규모는 731억원으로 수출비중보다 수입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13> 국내 생물산업의 수급규모

(단위: 억원, %)

구분	공급				계	수요				
	생산		수입			내수		수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2	827	68.3	384	13.7	1,211	965	79.7	246	20.3	
1993	1,521	69.5	731	32.5	2,252	1,683	74.7	569	25.3	

자료: 산업연구원, 2000년대 첨단기술산업의 비전과 발전과제(생물산업), (1992. 12) 통상산업백서(1995)에서 재인용

생물산업 육성방향의 기본방향은 생물산업의 산업기반 구축 및 세계 생물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이며, 신물질 개발체계 확립 실용화 연구기반 확충·산업화 및 지원 육성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방안으로는 생물산업 실용화기술 개발 추진,

생물산업 지원기반 확충, 대학내 생물산업 연구장비 지원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등이다.

세계 각국이 생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1992년 100억 달러이던 세계 시장규모가 2000년에는 연평균 33% 성장하여 1,000억 달러, 2005년에는 연평균 25% 성장하여 3,0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에 역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통산성을 중심으로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미국 68%, 일본 56%, 유럽 42%인 생물의약품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생물환경, 생물화학, 바이오에너지 부문의 비중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 생물산업의 세계 및 국내 시장규모 전망

구 분	1992	2000	2005
세계시장규모(억달러)	100	1,000	3,050
국내시장규모(억원)	965	32,000	140,000

자료: 산업연구원, 2000년대 첨단시술산업의 비전과 발전과제(생물산업), (1994. 12)

현재 산업형성기에 있는 국내 생물산업은 1992년 약 1,000억 원 시장규모에서 2000년에는 연평균 55% 성장하여 3조 2,000억 원, 2005년에는 연평균 34% 성장하여 14조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 21세기에 있어서 생물산업은 환경규제 등에 대처하고 각국의 육성정책 추진에 대비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강원도의 세계화 사업인 환동해경제권 구상과 연계하여 강릉첨단 과학산업단지를 국가공단으로 지정 추진한다. 또한 해양자원의 개발, 해양생태계의 보전등 관련업체 및 연구소, 교육시설, 휴양시설, 주거시설등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치료와 휴양이 연계된 의료휴양센터를 건립하여 종합 의료·휴양·연구기지를 조성한다. 치료와 휴양이 연계된 의료휴양센터를 건립하여 병원기능, 휴양지 콘도기능, 주거기능이 종합된 실버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수도권으로부터 접근도가 좋고 개발여건이 양호한 내륙지역에 생명과학도시 또는 산림과학도시를 건설하며, 생명공학관련 산업과 연구교육기능, 주거기능, 레저기능이 종합된 복합단지로 개발한다. 강원도 농업을 청정생명산업의 브랜드화하기 위한 연구·생산기반을 함께 조성한다.

21세기에 있어 농림수산업은 단순한 식량생산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는 복합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유전자공학, 생물공학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지식집약화·전문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국내시장에서의 지위도 유지하기

<표 15> 지역특화 가능산업

분야	특화 가능 R & D 과제	관련 지역	비고
광업	석회석 가공제품다양화기술 폐석 광석 석재자원이용 복합신소재 개발 고성능 실리카질 복합소재개발 석재/폴리머 복합소재개발 석재/역청질 복합소재개발 폴리머/시멘트 복합소재개발 고기능석 석회석 소재개발 중석폐재 가공기술(중석 정련후 남은 폐재에서 유효 성분추출 및 벽돌등 산업용재로 활용) 규사 추출 및 제조기술(중석광 모암에 포함된 규석을 추출하여 인조규사로 제조) 현무암 가공기술 폐석탄이용 대체에너지 개발 석탄이용 청정액화연료 기술개발 첨단 고효율에너지 개발 저탄소형 에너지개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고도화	영월, 정선(신동,남) 영월, 정선(춘천)	강원대RRC
생명 과학 분야	약초(황기, 당귀, 백출 등)이용한 신물질개발 산채류 추출물의 돌연변이성 억제 효과 및 항암효과 연구개발	인제, 홍천,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도내 전지역	제주도외 유일
환경 분야	청정수자원 보존관리기술(자동화시스템)개발 환경보존 및 오염복원기술 개발 탄광 공단폐수의 중금속이온 분리 및 회수기술 수질오염방지기술 환경정보 및 조기경보시스템개발	도내 전지역 탄광 공단지역 호수가 많은 춘천권 도내 전지역	보건환경연원, 강원대
정보 전자 통신 분야	관광정보시스템 개발 (관광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구축 연구개발) 해상기상관측 정보시스템 개발 농수산물수급 정보시스템 개발 (농업관측운영시스템 개발) 병해충 방제기술개발(전산망이용한 병해충 발생 정보의 신속한 활용기술개발)	도내 전지역 속초 도내 전지역 도내 전지역	
에너지 자원 분야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시설, 소수력발전, 대체에너지 개발 시범단지 부존자원, 자연자원, 가축을 이용한 환경에너지 연구 개발시범단지 물관리 자동제어 기술개발(작물별 적정 물관리 기준 설정 기술개발: 관개시기, 관개량, 관개방법)	삼척, 속초, 대관령, 정선 태백, 정선 도내 전지역	

자료: 강원개발연구원, 강원도 지역특화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 (과학기술처, 1995). p. 79

어렵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전문화를 위한 조직화 공동화를 강조하고 각종 지원시책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생물산업의 효율성

생물산업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기초연구로부터 바로 기술혁신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이며 소규모의 연구팀과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산업이다. 생물산업에는 중소규모의 생산설비로도 산업화가 가능하고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많으며,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청정도시를 추구하는 강원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산업이다. 일반적으로 동식물 및 각종 미생물등 살아 있는 생명체를 이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이나 공정을 개발하는 산업분야를 생물산업으로 칭하고 있다. 생물산업은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과 함께 21세기를 함께 이끌어 갈 첨단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나아가 의료 및 건강문제 식량·환경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린라운드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협상주제로 떠오름에 따라 국가의 존망까지 좌우할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업기술개발전문회사인 하이디어개발(주)과 생명공학연구소가 최첨단 조직배양기술로 바이러스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무병 무균 우량 인공씨감자(개당 1-3g)를 대량 생산,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첨단 인공씨감자의 대량생산은 남북한의 통일과 2천년대의 식량부족사태에 대비, 국내의 식량자급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명공학 기술은 농업생산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개발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기술담보제도 시범사업」에 의거 보유기술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기술의 제품화를 유도하고, 생물산업에 대한 기술력담보 평가기법을 조기에 확립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공업기반기술사업으로 추진 완료된 과제 및 특허기술 시제품 개발의 지원을 위해 「개발기술 실용화촉진사업」으로 생물산업을 지원하고, 생물산업기술의 단계별 가치화 지원을 통한 기술의 완성을 유도 하여야 한다. 1997년도에 배분된 150억원은 연리 6%,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이었다.

IV. 地方財政의 擴充方案

1.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1) 지방소비세의 신설

현행 지방세법상 소비관련 세목은 담배소비세, 마권세, 도축세의 3개 지방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소비관련 세목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예산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가 14.3%, 마권세가 1.3%, 도축세가 0.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1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⁵⁾

따라서 향후 신세원의 발굴시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 고려할 수 있는 지방소비세의 방안을 다음 세 가지 안으로 제시하여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1안 국세의 지방세이양등 국세부문과의 조정없이 기존의 지방세체계내에서 현행 도축세, 담배소비세를 포함하고 광고소비세, 환경소비세, 유통소비세, 관광소비세 등 소비관련 지방세 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제2안 국세부문에서 소비와 관련하여 부과되고 있는 과세대상 중 지방세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세원을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제3안 일본에서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지방소비세와 유사하게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제2안과 제3안의 경우 지방세수 확충효과는 크지만 중앙정부의 국세세원의 기준의 15개 지방세목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소비관련 지방세목의 조정방안으로서 제1안인 담배소비세와 도축세를 새로운 세목으로 통폐합하고, 광고소비세, 환경소비세, 유통소비세, 관광소비세 등 포함한 지방소비세의 신설이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소비 및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지방세수의 확충을 이루려면 국세의 일부 세원의 이양이 필요하며, 이 경우 가장 지방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가가치부과대상중 유홍음식업분, 숙박분, 운수창고업분, 개인서비스업분에 대하여 지방세로 이양하되 이를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석희, 1997)

그리고 관광소비세의 경우 관광자원 및 관광사업체의 직접이용들이 관광사업체나 관광자원을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일체의 관광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관광수입 중 과세표준을 20%, 관광세율을 20%로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16> 관광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수확충효과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관 광 수입규모 (1995년)	관광 세액		지방세징수액 (B)	세수확충효과 (A+B)
		세액(A)	비중(%)		
전 국	22,655	453.1	0.34	132.619	133.072
강 원 도	4,320	86.4	1.20	1,641	1,727

자료: 강원도 관광과

5) 1995년 일반회계 예산기준 지방세 13조 2,620억 원 중 담배소비세 1조 8,915억 원, 마권세 1,715억 원, 도축세 28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지방소득세의 신설

현행 지방세중 소득관련 세목은 주민세와 농지세의 2개 세목에 불과하다. 이들 2개 소득관련 세목으로부터의 세수는 1995년 예산기준으로 전체 지방세수입의 10.5%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농지세의 경우 약 0.01%에 불과하여 재원조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따라서 강원도에서 향후 소득관련 세목의 재원조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을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유사하게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제1안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세부문의 조정없이 현행 지방세 체계내에서 소득관련 세목인 주민세와 농지세를 새로운 세목으로 통폐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제2안 국세의 소득과세대상중 지방세적 성격을 지닌 축산업, 임업, 수렵업, 어업 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 생산규모가 국지적인 소득관련 세목을 이양받아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제2안의 경우 지방세 확충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국세세원에 대한 이양의지가 있어야 하며, 기준의 15개 지방세목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소득관련 지방세 목의 조정방안으로서 제1안인 주민세와 농지세를 통폐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농업, 임업, 수산업, 산림업 등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될 것에 대비하여 지방세수입확충을 이루려면 국세의 일부 세원에 대한 이양이 필요하며, 이 경우 가장 지방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중 임업소득분, 어업소득분, 광업소득분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되 이를 별도의 세목으로 신설하지

않고 단기적 대안에서 검토한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현행 소득할 주민세의 인상이다. 지금까지 소득세액의 7.5%였던 소득할 주민세는 교육비부담을 지방치단체도 일부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되었고, 그 결과 소득세액의 10%가 소득할 주민세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숫자는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소득세액의 15~20% 까지는 주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역을 세분화하여 인구집중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주민세의 밀집세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경우 지방세 수입은 5~10%정도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6) 1995년 일반회계 예산기준 지방세 13조 2,620억 원 중 주민세 1조 3,892억 원, 농지세 1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7> 주민세의 세율조정 및 세수확충효과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주 민 세 세 입 (1995년)	세율조정(15%)		지방세징수액 (B)	세수확충효과 (A+B)
		세액(A)	비중(%)		
전 국	13,892	2,083.8	1.57	132.619	134,703
강 원 도	260	39.0	1.57	1,641	1,680

그리고 현재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국세인 상속세와 종여세에 상속할 및 증여할 주민세(납부액의 15%)를 부과하여 타 세목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방세 징수시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는 것과 같이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징수시 주민세도 동시에 징수하여 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것이 인력 및 징수비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재산관계 세목조정과 부담조정

현행 재산관련 세목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일한 과세대상(부동산, 차량, 중기, 선박, 항공기)에 재산이 거래될 때 부과되고 있다. 또한 등록세와 면허세 역시 일부 과세대상이 서로 중복되고 있어 이를 3개 세목을 동시에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취득세는 거래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등록세는 권리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중복과세되는 부분이 각 과세대상의 75% 이상으로 주로 건물과 토지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을 부동산 거래세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관련 세목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도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므로 통·폐합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고, 다른 세목은 보통세이나 실체적으로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보통세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통합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제1안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개의 세목으로 통합하고 도시계획세를 따로 존치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재산세의 건물과표와 도시계획세를 1개 세목으로 하고 종합토지세의 토지과표와 도시계획세를 다른 세목으로 하여 2개의 세목으로 단순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재산관련 세목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는 중과제를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세의 비과세, 면세 대상범위도 지역경제의 발전

과 직결되는 경우에만 국한될 수 있도록 축소조정되어야 하며, 국가정책 목적인 경우 이에 상응한 재정적 보전을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탄력세율제도 확대와 공동개발세 도입

현행 지방세법에서 탄력세율 적용대상 세목은 보통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와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전세목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범위내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세수확보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탄력세율제도가 정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나 중앙정부로서도 탄력세율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유인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1)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지방세수증대가 현행 교부금 기준인 「기준재정수요-기준재정수입」에 따라 산정되어 배분되고 있다.(김동건,1996)
- 2) 대도시지역에서만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삭제하여 시, 군의 지방세수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현행 탄력세율제도에서는 도축세와 사업소세는 세율인하만 가능하고, 자동차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세율인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세목에 대해서는 세율의 인상과 인하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율결정에 관한 과세자주권을 신장시켜 나가야 한다.
- 4) 목적 중심의 탄력세율 적용의 세목범위와 세율인상폭을 확대하여 광역자치단체간 「공동개발세」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광역자치단체간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는 물론 협오시설 유치, 공업용지 부족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⁷⁾

2.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화(fiscal decentralization)와 기업유치의 경쟁이 본격화되면 지방세의 감면이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므로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할증과세 등에 의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쓰레기 청소, 체육문화공간, 농어촌개발, 교통 등의 지역공공재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만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 경상적 세입수입인 사용료, 수수료는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수혜도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⁸⁾ 그리고 유사한 행정서비스인 주민등록초본은 60원인데 비하여 호적초분

7) 국가공단조성계획 및 한강연안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간 공동개발세로서 식용수 목적댐 용수세, 영리목적 각종 지하수세, 수자원세, 골재채취세, 환경오염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8) 수수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기준으로 3~5년동안 미조정된 것이 1.32%, 5~10년의 경우가 15.8%, 10년이상이 4.1%로 나타나 3년이상 미조정된 것이 33.1%에 달하고 있다.

300원, 호적등본 400원, 지적등초본 500원의 요율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유사한 행정서비스가 합리적 근거 없이 요율이 결정되는 것은 업무처리의 통일성, 요율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 18>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시 세외수입 확충효과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규모 (1995년)	현실화시(10%)		세외수입액 (B)	수입확충효과 (A+B)
			세액(A)	비중(%)		
사용료	전 국	2,622	262.2	0.58	44,887	45,149
	강 원 도	46	4.6	0.43	175	180
수수료	전 국	4,594	459.4	1.02	44,887	45,346
	강 원 도	130	1.3	1.25	175	176

자료: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6

2) 토지개발사업, 건설자재개발사업, 관광유원지개발 등의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제고시키고 세입기반을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대 및 처분이 가능한 수익자산인 잡종재산의 매각재원을 '경영수익사업기금'으로 조성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는 유럽시장개척단과 같은 해외시장개척과 지역특성을 살린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⁹⁾

4)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수확충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소유재산의 정확한 파악, 관리개선을 통한 세외수입의 누수방지, 기존 수수료체계의 합리화, 현실화, 차등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산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관리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통하여 주민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면서 수입도 늘려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은 지역경제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물임대사업, 관광지 개발, 유료사업장운영 등 다양한 세외수입원을 개발하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지역사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사업에 제3섹터방식의 투자를 통해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국가재정의 이전 및 조정기능 강화

(1) 지방교부세의 상향조정 및 합리적 운영

9) 영국의 에딘버러축제와 독일의 뮌헨축제는 관광객이 1백만명으로 수입은 원화로 5조원에 달한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족한 일반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정제도로서 중앙정부에 편중된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히 배분하여 재정력(fiscal capacity)을 수평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로 각계 각종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등 지방재정 수요가 증폭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에 대한 인상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13.27%는 1983년에 책정된 것으로, 이는 각 자치단체의 최소행정수요인 기준재정수요액의 부족액을 완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1995년도의 경우 86%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없이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를 보전하고, 지역개발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야 한다.¹⁰⁾

또한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현행 기본행정수요(29개 측정항목)에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절감, 지방세의 징수율제고 및 일용인부사용억제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창균, 1997)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경우 대상사업의 적정성, 재원규모, 지원방식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특별교부세의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 조정

중앙부처가 그간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법령, 사업, 기타 각종 지시사항을 자치단체에 산발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독립된 재정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애로가 있을 뿐만아니라 영세한 지방재정으로서는 경비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중앙부처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각종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22조)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무리한 부담 전가 등을 지양토록 함과 동시에 중앙의 협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토록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권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신축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 현행 교부세율(내국세) 13.27%를 제1단계로 1997년까지 15.77%(2.5%), 제2단계로 2001년 까지 20.57%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내지 시책추진 및 신규사업의 보금 장려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급되는 특정교부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과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의 보조율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경비에 의해 실시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개발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시(도)비 보조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시(도)비 보조사업의 혜택범위, 규모의 경제 등을 감안하여 표준보조율 수준을 결정한 후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한 차등보조율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지방재정의 확충과 특화산업의 육성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물산업육성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하여 수도권, 중부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 지역별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6개 지역센터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면 각종 정보와 기술개발의 교류가 기대된다.

강원도는 원주기술연구집단화단지(WTP, Won-ju Techno Park) 조성산업의 특화산업분야로 지정된 원주의료전자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사업기간은 1997~2002년간이며 WTP의 경우 재원조달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5년간의 지원자금이 300억 원으로 동일하다. (원주시, 1997)

한편 춘천시는 환경친화적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자하는 강력한 의지로 150억원 규모의 벤처창업센터를 건립중이며, 벤처기업지원회사인 POTATO Inc.건립에도 출자하였다.

5.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의 구축

(1) 시(군)청 세무전산시스템의 구축

시(군)청 세무전산시스템의 구축방향은 크게 통신전산망, 표준전산체계 및 운영의 효율화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통신전산시스템은 국제표준규격에 따라 LAN 및 TCP/IP가 필요하며, 이외에 세전전용전산망과 세무관련 부서간의 Net Work구축이 되어야 한다.

한편 표준화전산체계의 구축방향은 open system을 채택하고 운영체계의 단일화 및 S/W운영의 통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전산기 설치로 세정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공유의 공동화, 자체통계 DB의 구축활용, 장애시를 대비한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2) 도청 세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행 강원도의 지방세관리업무는 시·군을 연계하는 전산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체납조회, 재산조회, 통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통계자료관리에 있어 각 시·군에서 보고된 자료를 도청에서 다시 집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세 완납증명서발급, 재산조회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도청 세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광역시의 전 자치구 및 군을 연계한 통합시스템의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본청에서는 각 시(군)을 연계한 세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무통계DB, 체납종합DB, 재산DB, 그리고 세무종합 DB 등의 순으로 구축한다.

V. 結論

이상에서 강원도지역의 중소기업형 산업구조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SOC시설에 관하여 개관하였으며, 지방화시대의 지역에서 육성하여야 할 미래산업인 생물산업의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의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강원도는 첨단 고부가치 산업을 육성할 축적된 기술은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생물산업은 모든 도민에게 새로운 산업이 될 것이다.

강원도의 SOC분야는 지정학적으로 대부분 임야이고, 지금까지 공업화가 되지 못하는 등 타시도에 비하여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가경쟁력제고라는 측면에서는 부산—포항—동해—강릉—속초를 잇는 철도의 확충과 동서전철의 개설을 비롯한 SOC의 확충으로 가능할 수 있다.

강원도는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관광자원의 개발은 관광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며, 고기술사회에 대응하는 생물산업의 육성과 동시에 관광자원의 효율화로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유치해야 관광승수도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춘천권, 원주권, 태백권 및 강릉권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생물산업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초미의 과제이다.

지방화시대는 중앙정부의 조세에 관한 각종 세금수입에서도 양여가 지방자치단체에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지만 SOC분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동서고속전철과 국도의 건설 등은 기존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지방소득세의 신설

둘째, 지방소비세의 신설

셋째,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넷째, 지역개발세의 신설

다섯째, 체납세 징수사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도청과 세무관련기관간의 전산시스템의 효율화 등이다.

강원도는 타시도에 비해 개발이 되지 않고 있지만 오염되지 않은 환경, 예상되는 풍부한 관광자원의 개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각 권역별 환경친화적 특화산업의 육성으로 환태평양시대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강원도, 강원의 비전 21, 1996.
- 강원개발연구원, 강원도의 사회지표, 1996.
- 강원개발연구원, 강원도 교통부문 SOC확충방안, 1996.
- 강원개발연구원, 지역특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1995.
- 건설교통부, '95도로교통량통계연보, 1996.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1995.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문 민자유치사업 설명회, 1995.
- 교통개발연구원, 한국 교통부문의 투자 및 운영 효율화 방안, 1995.
- 교통개발연구원, 교통부문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방안, 1995.
-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계획(안), 1995.
-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정보 민자유치의 현황과 전망, 1995.
-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정보 자동차시대의 도로정책, 1995.
-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정보 사회간접자본 정책의 문제점과 방향, 1996.
- 국토개발연구원, 지역균형 발전시책의 시책과 발전 방향, 1997.
-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6.
- 대구개발연구원, 기술개발실태와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1995.
- 대구개발연구원, 대구경북지역의 특화산업선정과 육성방안, 1997.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 발굴, 1995.
- 산업연구원, 한국 관광산업의 장기발전전략, 1997.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방안, 1995.
- 장정훈, 민자유치를 통한 SOC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95.
- 원주시, 테크노폴리스: 21세기 원주지역 발전전략, 1997.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감, 1996.
- 철도청, 장기철도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992.
-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역의 산업관련 SOC현황과 정책과제, 1996.
-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성격과 한계, 1996.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의 주요현안과 정책대응, 1996.
-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1996.
- 한국은행, 강원도의 시군별 경제구조, 1996.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민자유치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 1995.
- 한국건설업체연합회, 프로젝트금융의 유형 재원 및 기법에 관한 연구, 1995.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7.